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94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기덕, 김원태,
민병주, 박승진, 서상열,
아이수루, 오금란, 이종태,
, 이종환, 전병주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없도록 표창 금지 조문을 마련하고 있으나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은 부재하여, 표창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표창을 취소하지 못하는 등 소극 행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.
-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(2023. 7.)에서도 조례 개정이 권고된 사안으로,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표창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2. 주요내용

가. 표창 취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6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표창의 취소)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
3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는 공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·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6조의2(표창의 취소) ① 표창권자는 <u>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</u> 2. <u>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</u> 3. <u>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</u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·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의2(표창의 취소)에 표창의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통상 표창 취소에 따른 별도의 비용소요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